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6348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6348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가소25909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4. 4. 25.

판결선고 2024. 5. 23.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가소259093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7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구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안경업소(이하 ‘이 사건 안경업소’라 한다)1) 를 개설, 운영하는 사람으로, 원고에게 E를 소개한 바 있다.

나. E는 자신의 처인 F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18. 7. 12. 피고에게 안경대금으로 1천만 원(이하 ‘이 사건 안경대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E는 원고를 기망하여 임차보증금 명목 사기죄 및 주택 매수 명목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이하 ‘이 사건 사기죄’라 한다)가 인정되고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고단340호, 대구지방법원 2020노953호, 대법원 2020도16213호, 이하 위 형사판결을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안경업소를 방문하면 피고, E, G은 공모하여 E가 대금을 부담할 테니 선글라스와 안경을 구입하라고 수차례 재촉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안경은 필요 없다고 거절하였으나, E가 원고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억지로 호의를 베풀고 사기를 치고자 안경을 해 준 것이다.

2) E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사기죄를 범하면서 원고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그 중 일부인 1천만 원으로 이 사건 안경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이 사건 안경대금은 원고의 안경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3) 이 사건 안경대금 중 원고의 안경대금 443만 원을 제외한 557만 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557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는, E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1억 원을 부동산매매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착복한 사실과 그 금액 중 1천만 원을 피고에게 안경대금으로 지급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모른다고 한 것은 불법을 묵인한 것이다(원고의 2023. 11. 1.자 준비서면).2)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급부가 이루어졌으나 그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 그 급부는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급부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주체가 청구할 수 있다. 변제는 채무자 외에 제3자도 할 수 있는데(민법 제469조 참조), 이행보조자의 변제는 채무자의 변제로 취급된다(민법 제391조 참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스스로 또는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제3자가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각각 변제의 주체로서 그 변제로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변제 주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자신이 변제 주체임을 전제로 변제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사람에게 있다(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참조).

나) 판단

먼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안경대금은 원고가 아니라 E가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 분명한데, E가 원고의 이행보조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안경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제3자인 E가 타인인 원고의 안경대금채무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라면 제3자인 E가 변제의 주체로서 그 변제로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급부부당이득에 있어서 변제자가 아닌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은 그 범위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불법 묵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E의 이 사건 사기죄 관련 불법을 묵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피고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금전의 편취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본다.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325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E로부터 이 사건 안경대금의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원고로부터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형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안경대금이 포함된 대출금 자체가 원고로부터 편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송승용, 판사 명재권, 판사 이민수

1) 의료기사법 제13조의4 제1항에 정한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

2) 아래에서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 판단하기로 하되, 원고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